

중 국

[판례 분석] 방영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상업 목적 이용

2026. 05. 20.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방영권은 기술 장비를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권리로서 방영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저작물의 상업 목적 이용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함. 이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그 저작물의 이용이 주된 영업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부가적 서비스로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업 목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음.

1. 현황

중국 노래방(KTV) 업계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08년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이하 '음집협'이라 함)를 정식으로 비준·설립하여 음악 영상물의 방영권과 복제권에 대한 통합관리를 담당하게 하였음. 음집협은 설립 이후 수많은 KTV 영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협상 및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은 음악 영상물 방영권 침해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형성하여 왔음. 이와 관련된 전통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KTV 사업장이 음집협의 허가 없이 음집협이 관리하는 음악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방영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최근 들어서는 KTV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족욕업, 안마업 등 비전통적인 오락 영업장에서 KTV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저작권 침해 분쟁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본문에서는 족욕 업소에서 무단으로 음집협이 관리하는 음악 영상물을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해 영업장의 주된 서비스가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음악 영상물 재생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湘1003知民初278号		
	2심	(2025)湘10知民终85号		
관할 법원	1심	후난성 천저우시 수셴구 인민법원(湖南省郴州市苏仙区人民法院)		
	2심	후난성 천저우시 중급인민법원(湖南省郴州市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협회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 B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 1심 법원 판결 배상 금액의 적정성 여부		
판결 결과	1심	1. B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 2. B 회사는 A 협회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01,259.6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17조, 제52조 제8호, 제53조, 제54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제25조			
최종 판결일	2026년 2월 9일			

(1) 사건 개요

중국 유일의 음악·영상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A 협회는 여러 음악 영상물 제작사들과 음악·영상 저작권 이용허락 합의서를 체결하고, 음악·영상물의 방영권과 복제권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취득하여 KTV(노래방) 사업장에서의 독점 허가 및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함.

A 협회는 족욕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B 회사 영업장에서 “음악 선곡” 시스템을 통해 A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 영상물(이하 “사건 음악 영상물”이라 함)이 무단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음악 선곡” 설비 공급업체 자료를 통해 B 회사 영업장에 35개의 룸이 존재하고, 해당 설비가 일정 기간 계속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A 협회는 B 회사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

건 음악 영상물을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방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B 회사는 자신의 주된 영업이 족욕 서비스이며 KTV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부수적 서비스에 불과하여 전문 KTV 영업자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B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 또한 B 회사는 "음악 선곡" 시스템 설비는 제3자 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A 협회가 해당 설비 공급업체와 체결한 수권서를 통하여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한 방영권 허가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소송 청구 사항 및 항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①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 ② B 회사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A 협회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제작물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를 저작권자로 추정함. A 협회가 제출한 음상 저작권 이용허락 합의서, 이용허락 증명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A 협회가 사건 음악 영상물의 방영권과 복제권을 통합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침해 사용자에게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A 협회가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인정됨.

침해 행위의 구성에 관하여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사건 음악 영상물인 38개 음악 영상물은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화면 내용이 음악 테마와 서로 보완되며 감독, 배우, 촬영, 편집, 조명, 합성 등 창작 노동이 응축되어 저작자의 독특한 개성이 포함된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함. B 회사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기 사건 음악 영상물의 "음악 선곡" 서비스를 제공하여 A 협회의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한 방영권을 침해하였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B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따르면 족욕, KTV, 노래방, 오락 서비스 등이 영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과 부수적 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또한 족욕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은 자유롭게 "음악 선곡"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음. 비록 모든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 유형의 족욕 업소 운영 방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 회사가 사건 음악 영상물을 사용한 것에는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B 회사가 "KTV, 가무, 오락 서비스는 부수적 항목에 불과하고 '음악 선곡' 서비스는 무료 제공이므로 1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음악 선곡" 시스템은 제3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B 회사가 제3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은 단지 "음악 선곡" 시스템 설비의 소유권과 사용권일 뿐이며 곡의 방영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제3자 회사 역시 곡 목록 내 음악에 대한 복제권만을 보유할 뿐이므로 해당 음악에 대해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방영권을 허락할 권한은 없음. 따라서 B 회사가 제3자 회사와 체결한 수권서를 통하여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한 방영권 허가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음.

더 나아가 A 협회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통지서, 변호사 의견서 등 법률 문서 발송 및 직원의 현장 방문 협의 등을 통해 B 회사에게 침해 중지 및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회사는 어떠한 시정 조치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따라서 B 회사는 주관적으로도 명백한 침해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됨.

종합하면 B 회사는 A 협회의 허락 없이 공중에게 사건 음악 영상물을 방영하였으므로, A 협회가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해 보유하는 방영권을 침해하였음. 따라서 1심 법원이 B 회사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함이 없음.

2) 배상 책임

B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저작권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A 협회의 입증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A 협회는 시장에서 비교적 많은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판권국이 공고한 사용료 기준을 바탕으로 권리자와 협의하여 룸수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A 협회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 분쟁 사건에서 룸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일정한 합리성이 있음.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과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5조에 따르면 A 협회의 실제 손실, B 회사의 불법 수익 및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배상 방식을 적용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음. 침해 배상 기간과 관련하여 B 회사는 영업장의 실제 운영 기간이나 휴업·폐업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A 협회 또는 관련 권리자로부터 사건 음악 영상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B 회사의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초 발생하여 KTV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법원은 침해 기간 계산 시 2021년 영업 기간 중 1개월을 감액하였음. 이에 따라 침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룸 수는 총 35개이며 각 룸이 사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침해 기간을 산정하며 총 35개 룸 중 31개 룸은 1,065일, 3개 룸은 각각 855일, 856일, 857일 그리고 나머지 1개 룸은 224일로 산정됨. 그 외에 A 협회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기간, B 회사의 룸 사용 상황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일당 2.8위안을 기준으로 "룸*일(룸 숫자에 침해 일

수를 곱한 것" 방식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B 회사에게 A 협회의 경제적 손실 100,259.6위안 및 합리적 비용 1,000위안을 합산한 총 101,259.6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2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지역 경제 격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영업 가동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족욕과 KTV 영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룸*일" 방식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에서 중국 저작권법상 음악 영상물을 공개적으로 방영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권리 행사 범위 및 방영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음악 영상물에 대한 상업 목적 사용에 대해 판단하였음.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원고적격과 권리 귀속 증명

본문의 판례는 음악 영상물 분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판단 구조를 제시함. 법원은 A 협회는 여러 음악 영상물 제작사들과 음악·영상 저작권 이용허락 합의를 체결하여 KTV 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음악 영상물의 방영권과 복제권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A 협회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 영상물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 방식이 필요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 협회가 모든 저작물의 원권리자, 이용허락 경로, 권리 존속 여부를 개별적으로 완전하게 증명해야 한다면 수백 곡이 넘는 음악 영상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물 또는 제작물의 서명, 이용허락 계약, 이용허락 증명서 등 외관상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되고, B 회사가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A 협회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이 판례의 의미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권리행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개별 권리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현실적인 권리 관리 구조에 맞추어 증명 부담을 조정했다는 데 있음.

다만 이 법리가 무제한적인 권리추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A 협회가 제출한 이용허락 증명자료는 적어도 사건 음악 영상물과 관리 범위, 권리 종류, 소송 제기 권한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또한 B 회사가 특정 곡에 관한 이용허락 부존재, 이용허락 기간 만료, 권리 중복 관리 등의 반대 증거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별도로 심리해야 함. 본문의 판례에서는 B 회사가 그러한 구체적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A 협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음. 그러므로 해당 판례는 권리추정 원칙을 통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실효적 집행을 보장하되 반대 증거에 의한 다툼 가능성은 열어둔 균형적 접근으로 평가됨.

2) KTV 서비스의 상업 목적 이용 판단 기준

중국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영권(放映权)이란 "영사기, 슬라이드 프로젝터 등 기술 장비를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권리"를 의미함. 이에 따르면 방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존재, 공중 상영, 무단 사용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 중 저작물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침해자가 그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함. 즉 사적 또는 비공개로 저작물을 상영한 경우에는 방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 확인되면, 그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상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방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업 목적 이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

본문의 판례에서 B 회사의 핵심 항변은 자신이 KTV를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업자가 아니라 족욕 보건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KTV 서비스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수적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B 회사의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 KTV, 오락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영업장 안에서 고객이 족욕 활동 중 "음악 선곡"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음악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KTV 서비스가 주요 영업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즉 상업적 이용 판단의 핵심 기준은 KTV 서비스가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 영업인지 또는 별도 요금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KTV 서비스의 상업 목적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이 영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임. 이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고객이 KTV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B 회사가 동종 족욕 업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고 고객의 방문 또는 소비 의향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상업 목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객 유인, 체류 시간 증가, 서비스 차별화, 매출 증대 가능성에 기여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상업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는 법원이 방영권 침해 판단 과정에서 상업 목적 이용 개념을 직접적인 요금을 받는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족욕 업체 B 회사가 K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KTV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음악 영상물의 재생은 영업장 전체 서비스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용은 사적 감상이나 비영리적 이용이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한 공개적·영업적 제공에 해당함. 특히 음악 영상물은 단순 음원이 아니라 화면과 음악이 결합된 시청각 저작물로서 그것이 고객에게 공개 재생되는 순간 방영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됨. 이 같은 취지에 따르면 본문의 판례는 비전통적 족욕업, 안마업, 숙박업, 식음료업 등 비전통적 오락 사업장에서 음악 또는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됨.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법상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는 한편, 방영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써 상업 목적 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KTV 서비스가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 영업인지 또는 별도 요금을 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KTV 서비스에 의한 음악 영상물 상영이 영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음악 영상물 사용은 상업 목적 이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湘10知民终85号